「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0. 6. 8. 개정 판 (시행 2021. 3. 1.) → 2012. 9. 1. 개정 판 (시행 2012. 9. 1.)

바뀜 7 · 신설 1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34/compare?from=1032&to=342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7:09:20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3조(자격)** ① 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년 재신청 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절차) 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산학처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4조(절차)** 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진흥실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5조(선정기준)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	**제5조(선정기준)** 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하며, 국내 신청은 매 학기당 1명을 넘지 못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5순위. 연구년 2회 차 신청자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08〉	**제6조(연구년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재직 중 2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8조(허가기간) 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허가기간)** 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특별 연구년제)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항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① 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제9조(취소)**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서식 제7-1호)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또는 귀국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1회차 연구년 교원이 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2회차 연구년 교원의 경우는 제7조 ⑤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제12조(복무의무)** ① 연구년을 마친 교원은 연구년 후 최소한 연구년 기간의 2배수에 1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봉직하여야 한다. 단, 우리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속한 만 60세 이상의 교원 중 연구년 최초 신청자는 ①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전 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년 중 지급된 보수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